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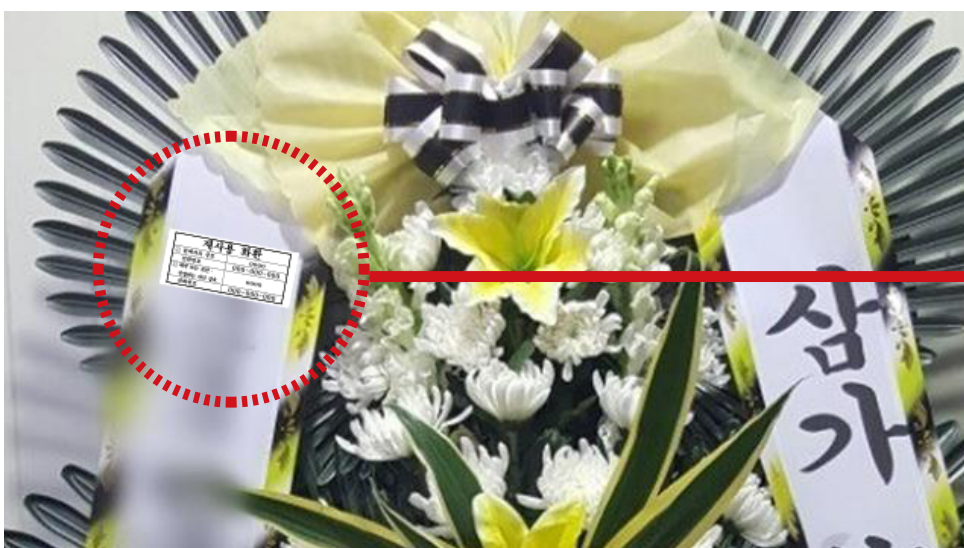
올해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됩니다.

- ☑ '생화'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'재사용 화환'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
- ☑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
표시사항

1. “재사용 화환” 표시
2. 판매자의 상호(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의 상호) 및 전화번호
※ 사이버몰(온라인몰)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사이버몰에도 “재사용 화환”임을 표시해야 함



재사용 화환	
☑ 판매자의 상호	0000
전화번호	000-000-000
☑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의 상호	0000
전화번호	000-000-000



위반시 과태료(표시의무자)

위반 행위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미표시 / 표시방법 위반 /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/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·변경	300만원	600만원	1,000만원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('20.8.21 시행)